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305

발의연월일: 2022. 9. 8.

발 의 자:신현영·김병기·김정호

강득구 · 김병욱 · 박재호

정일영 · 임종성 · 김승원

강민정 • 유정주 • 한준호

홍기원 · 허 영 · 송갑석

이워택 • 김병주 • 허종식

의원(18인)

제안이유

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 의한 폭력 행위, 방화 사건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로 인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중상해 를 입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서 응 급의료기관 내에서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.

2019년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하여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종사자 등 대상의 폭행·협박, 상해·중상해, 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, 현재까지 응급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폭력의 수위도 크게 높아지고 있음.

이에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 행위 시 응급의료기관의 장등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, 피해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해 치료비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(안 제12조제2항 신설).
- 나.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·협박 등으로 사상(死傷)을 입었을 경우에 피해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그 가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치료비등을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(안 제12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의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·손상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(이하 "시·도"라 한다)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치료비 등의 대지급)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등의 방해행위를 한 사람으로부터 폭행·협박 등으로 사상(死傷)을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그 가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치료비 등을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피해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그 가족이 치료비 등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치료비 등을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.
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치료비 등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폭행·협박 등으로 사상을 입힌 사람에게 그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급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고,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있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 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 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.
- ⑥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·범위·절차 및 방법, 구상의 절차 및 방법,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3제1항 중 "제22조제4항에"를 "제12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4항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)	제12조(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)
(생 략)	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
<u><신 설></u>	음)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 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의
	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
	<u>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·손</u>
	상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
	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
	<u> 치시・도・특별자치도(이하</u>
	"시·도"라 한다), 시·군·구
	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	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
	<u> 여야 한다.</u>
<u> <신 설></u>	제12조의2(치료비 등의 대지급)
	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제12조제
	1항에 따른 응급의료 등의 방
	해행위를 한 사람으로부터 폭
	행・협박 등으로 사상(死傷)을
	입었을 경우에는 피해 응급의
	료종사자 또는 그 가족은 보건
	복지부장관에게 치료비 등을
	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

수 있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피해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그 가족이 치료비 등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치료비 등을 대신지급하여야 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치료비 등을 대지급한 경 우에는 폭행·협박 등으로 사 상을 입힌 사람에게 그 대지급 금을 구상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 지급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고,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 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 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

② (생략)

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.
⑥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·범위·절차 및 방법, 구상의 절차및 방법, 구상의 절차및 방법,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22조의3(구상권의 시효)① 제1 2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4항에

② (현행과 같음)